

의안번호	제2022 - 3차
의결일자	2022년 4월 13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마스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 마스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다.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동 21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마스틴투자운용(주) 회의실

출석현황

발행주식의 총수 : 1,900,000주 주주 총수 : 1명

출석 주식수 : 1,900,000주 출석 주주수 : 1명

의장인 대표이사 도병운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현지법인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출자 승인의 건

의장은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 및 현지법인 유상증자 결의서를 통하여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출자 승인의 필요성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의 안건에 대해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출석주주 전원은 안건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체결 승인의 건

의장은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회의자료 및 통화스왑거래조건서를 통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장외파생상품(통화스왑거래) 거래계약을 통화스왑거래조건서로서 체결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의 안건에 대해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출석주주 전원은 아래 첨부 의 장외파생상품계약 체결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제3호 의안 : 단기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설명하고,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당기 차입계획에 따라 단기대출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의 안건에 대해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출석주주 전원은 안건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가결하다.

제4호 의안 :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

의장은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즉, 출석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이로서 금일 의안이 전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 오후 2시 30분)



상기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1년 4월 13일

주식회사 마스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대표이사 도 병 윤



▶ 배부자료: 2022 년도 제 3 차 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